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51

발의일자 : 2022. 11. 17.

회부일자 : 2022. 11. 23.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정한석 의원 외 14명

2. 제안 이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촉진으로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쉬운 공공언어의 보급을 통해 경상북도 행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공공언어 사용 진흥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문화예술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11월 23일 ~ 11월 28일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공공언어는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및 외래어가 난무하고 있어 도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조례전부개정으로 공공언어 사용자와 도민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국어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서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써 공공언어 사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명에서 공공언어의 “진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본문에 관련 조항 제6조(공공언어의 진흥)의 내용이 공공언어 진흥보다는 어문규범 등에 맞게 바른 “사용”에 관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명을 “공공언어 및 국어 바르게 쓰기”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한글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정의]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규정으로,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¹⁾ 제3조의 정의규정을 대부분 적용하였고, 제6호 “경상북도 토박이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4조에서 지역어 보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경상북도 지역어”²⁾로 법률용어를 일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어정책과 관련된 법률임.

2)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법 제4조에 따라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4조**는 국어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5조에 따라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제4조에서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던 시행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제2항제5호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여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공공언어 사용 진흥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에 공공언어를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제2항 각 호에서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 지켜야 할 어문규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제목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과 관련하여 “진흥”에 관한 사항보다는 바른 “사용”에 대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조 제목을 “공공언어의 사용 진흥”에서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7조는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구호 등을 정할 경우에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현행 어문규범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와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개선하여 공공언어 정책과 국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국어사용을 강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문서등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실태 조사를 위해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공언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조례의 임의규정을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연구기관 및 협회·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12조**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3조**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연구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14조**는 공공언어와 국어,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연구기관, 협회·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공공언어와 국어 바르게 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알기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길이며, 전세계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위한 공공언어 순화와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언어를 정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공공언어와 국어사용을 통하여 공공언어 사용자와 도민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국어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제명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서 “경상북도 공공언어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전부개정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향후 경상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서 작성 등에 있어 공공언어 및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언어 사용과 공문서등에 수정·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관	사업내용	예산 (도비)
합계	11건			1,180
1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통통국어지킴이단 운영 및 우리말 사랑거리캠페인 등	15
2	우리말사랑 프로그램제작 지원	지역 언론사	다큐, 캠페인 등 우리말사랑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00
3	경상북도 공공언어 개선 연구용역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경상북도 공공언어 실태조사 및 개선·정책방안 마련	20
4	경상북도 한글대잔치 개최	경북문화재단	한글날 기념식 행사 및 한글작품 전시	50
5	아름다운 한글사랑 캠프	안동시	한글 바로 알기 캠프 운영 * 총 사업비 : 50(도 15, 시 35)	15
6	한글문예대전	영남일보	한글 관련 공모전 및 전시, 한글 유적지 탐방 등	80
7	훈민정음해례본 찾기 운동 지원	경북불교문화원	훈민정음 해례본 찾기 캠페인 및 발굴을 위한 조사 등	100
8	한글문화활용 콘텐츠개발 사업	한국국학진흥원	한글자료조사, 학술대회, 디자인 공모 등	200
9	세계한글작가 대회 지원	(사)국제펜 한국본부	유명 문인 문학 강연, 세미나, 강연과 포럼, 전시, 축제 등 * 총 사업비 : 230(도 100, 경주시 100, 자30)	100
10	옛한글 OCR 데이터 구축사업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이 옛한글 판독이 가능하도록 학습용 데이터세 구축 *총 사업비 : 1,900(국 1,700, 도 200)	200
11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 기록물 해독사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통기록물 자동 인식·해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메타버스 가상 서원을 구현 *총 사업비 : 10,250(국 8,750, 도1,500)	300